##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3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정희용·박충권·박준태

조지연 · 김형동 · 백종헌

정동만 · 서천호 · 박덕흠

김선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 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 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불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제3항제 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③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4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			
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u>다만, 산불 등으로 인하여</u>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경		
	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는 전액 국고		
	에서 부담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